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10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엄태영
김기웅 · 진종오 · 구자근
김상훈 · 이성권 · 조은희
김미애 · 이상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자로부터 지정·허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의 필수시설과 부수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음으로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있음.

현재까지 경매사 자격과 관련하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이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경매사는 도매시장 상장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경락자 결정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경매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음.

고품질 신품종 농산물의 개발 및 농업인에게 우수 종자를 보급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고품질 농산물 출하와 출하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겸영사업에 종자의 개발과 보급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신설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시설의 사용)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설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의 별표 2에 의한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에 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 (경매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27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매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알선 및 빌려준 경우
3. 제27조제3항 또는 제82조제4항의 업무정지나 면직의 상태에서 계

속하여 경매사 업무를 한 경우(이 경우 타 시장에서의 경매사 업무도 포함한다)

4. 제82조제4항의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면직이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매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개설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경매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법인

3. 자격취소 사유

③ 제1항에 따라 경매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27조의2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 (경매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경매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이하 “경매사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매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매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4항 단서 중 “수출입 등의”를 “수출입·종자개발 및 보급 등의”로 한다.

제88조에 제4호의2와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7조의4를 위반하여 경매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자격증의 사용이나 대여를 알선한 자

4의3. 제27조의4를 위반하여 경매사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2 (시설의 사용) 도매시</u> <u>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운영</u> <u>에 필요한 경우 개설자가 설치</u> <u>한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u> <u>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u> <u>라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u> <u>또는 중도매인이 우선적으로</u> <u>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u> <u>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의 별</u> <u>표 2에 의한 필수시설, 부수시</u> <u>설에 한정한다.</u>
<u><신 설></u>	<u>제27조의3 (경매사의 자격 취소</u> <u>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u> <u>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경매사가</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u> <u>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u> <u>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u> <u>실이 드러난 경우</u> <u>2. 제27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u> <u>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u> <u>용하여 경매사 업무를 수행</u>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알선
및 빌려준 경우

3. 제27조제3항 또는 제82조제
4항의 업무정지나 면직의 상
태에서 계속하여 경매사 업
무를 한 경우(이 경우 타 시
장에서의 경매사 업무도 포
함한다)

4. 제82조제4항의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면직이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경매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
우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한
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개설
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경매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법인

3. 자격취소 사유

③ 제1항에 따라 경매사의 자
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신 설>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 ③ (생략)

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

④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27조의2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7조의4 (경매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경매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이하 “경매사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매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매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⑤ (생략)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5. ~ 11. (생략)	----- -- <u>수출입・종자개발 및 보급 등의</u>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88조(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제27조의4를 위반하여 경매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자격증의 사용이나 대여를 알선한 자</u> 4의3. <u>제27조의4를 위반하여 경매사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u> 5. ~ 11. (현행과 같음)
---	---